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8 선고 2022가단1085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협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10. 18.

판 결 선 고 2022.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7.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는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16. C은 D에 12,708,929원과 그중 4,480,003원에 대하여 2011. 6. 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전13131),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부친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1. 20.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는 피고이고, 망인의 자녀로는 F, G, H, I, J, C이 있다.

다. 피고와 망인의 자녀들은 2019. 7. 26. E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위 분할협의 무렵 C은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피고는 2019.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소359737), 위 사건에서 2022. 4. 21. C은 원고에게 12,708,929원과 그중 4,480,003원에 대하여 2011. 6. 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초과 상태였던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2/15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양수한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일반 채권자들을 궁극적으로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수십 년간 부부로 지낸 망인과 피고가 공동생활의 근거지로 마련한 부동산인 점, 부부가 부동산 매수 시 공동으로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어느 일방 명의로登記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특히 과거에는 남편의 명의로登記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피고가 적극적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적어도 가사노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망인과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C을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기여를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합의에 따라 정한 피고의 기여분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②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주요한 상속재산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C뿐만 아니라 피고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모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였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실상 망인의 자녀들의 공통된 상속 포기로 보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2/15 지분을 가진 C의 채무 때문에 망인의 다른 자녀까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가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함께 거주하던 주거에 해당하고, 현재까지 피고는 위 부동산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1) 이처럼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계속하여 기존의 주거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자신들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일생 동안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해 온 배우자 사이의 기여 및 노력에 대한 평가, 남은 배우자의 여생을 위한 부양의 목적,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과 같은 의미를 고려하면 이러한 재산 이전의 형태가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과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정왕현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및 점포

1층 내지 5층 각 495.40㎡,

옥상 31.24㎡, 지하 267.4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남구 대 1295.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73.0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920분의 104 끝.

1) 피고가 다른 곳에 주소를 둔 기간은 있으나 이는 딸의 집 등에 잠시 주소를 두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